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75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이철규·박충권·조정훈

박준태 • 김성원 • 강승규

박성민 • 구자근 • 정희용

김 건 • 유상범 • 이인선

임이자 · 이양수 · 정점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함)간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근거규정이 없어 공정한 계약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안전관리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대가는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7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

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가 이러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법률 제 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전력기술 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를 "전력기술인단체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⑥ (생 략)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⑦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	
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	
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u><후</u>	<u>o</u>]
<u>단 신설></u>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감액
	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
	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
	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
	거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8
	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
	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저 및 해임신고 등) ① 제22조제1 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 는 해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 관리법 |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u>하 "전력기술인단체"라</u>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 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세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
<u>전력기술인단</u>
체에

② · ③ (현행과 같음)